

#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6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  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  
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 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 
오금란, 윤종복, 이봉준,  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  
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  
최민규, 황철규 의원(20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종전 「노인복지법」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「노인일자리법」)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던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를 “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”으로 정비함. (안 제1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,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제2항”을 “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12조 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)의 인용법령<sup>1)</sup>을 변경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명    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[인용법령 정비취지] 현행 같은 조례 인용규정인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(2023. 10. 31.)됨에 따라 본 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관된 내용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아 별다른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